

미 왕 주 식 회 사(청합장학회)

(우)0624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18층 TEL : 02)554-5006 FAX : 02)556-8858

담당자 : 강다형, E-Mail : meewang@naver.com

문서번호 : 청합2018-0701

시행일자 : 2018. 7. 09.

수 신 : 서울대학교총장

참 조 : 학생처장

제 목 : 장학업무 협조의 건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교에서 당장학회 설립 취지에 적합한 1학년 학생 중 경영대 1명, 공대 2명의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면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코자하며, 기 선정된 장학생의 학적변동, 성적, 등록금등을 통지하여 주시면 장학금을 지급코자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왕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여 상 길



청 합 장 학 회 장



장 학생 지원서

사
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전 화	(주택)	(휴대전화)	
대학교명	대학교	대학	학과·부
취 미		특 기	
종 교		병역관계	

본인은 귀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지원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총(학)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세대주 재산증명서 1통

20

성명

인

청 합 장 학 회 귀 하

청 합 장 학 회 취 지 및 규 약

청합장학회 설립취지

무릇 국가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지성과 능력여하에 기인하는 것이요, 이는 교육의 힘에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인재에 달려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인재란 아름다운 심정 즉 사람됨이 우수함과 과학적 능력을 말함이요, 우리 동양의 역사를 살펴 볼때 근세에 와서 우리 유색인들이 침략과 지배를 받은 것은 과학력(科學力)의 열등 때문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본회 설립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각고(刻苦)·면려(勉勵)·근검(勤儉)·절약(節約) 끝에 적으나마 힘을 이루어 내 인생의 발자취와 또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뜻을 가지고 본 장학회를 설립하여 이를 영구히 지속코자 하는 바이다.

본회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불의부정(不義不正)을 배격하고 청렴(清廉) 청정(淸淨)해야 한다는 “청(淸)”자와 불신불화(不信不和) 풍조를 배격하고 화합(和合)·융합(融合)해야 한다는 뜻의 “합(合)”자를 따서 그 명칭을 청합장학회라 하고 장학생의 대상은 우수한 자질과 그 성적이 현저함에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학업에 곤란을 받는 학도를 선정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학생은 이와 같은 설립취지에 따라 면학(勉學) 불식(不息)하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바라는 바이다.

설립자 여철연
장학회장 여상길

청합장학회 운영규약

1. 장학회 기구

5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 운영을 담당하고 장학생 선발 심사업무도 겸해서 수행토록 한다.

장학회 사무실 소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의 21 청합빌딩 4층 501호실에 둔다.

전화 : 02-554-5006

2. 장학자산

장학금 재원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의 21 소재의 건물인 청합빌딩 임대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장차 재단법인 설립을 계획중에 있음)

3. 장학생 선발 방법과 기준

1) 선발방법

국내 각 대학교의 인문, 사회, 자연계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을 선발 예정인원의 복수의 후보자를 총(학)장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 공정한 선발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정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선발시기는 매년 1학년 1학기말까지 확정되도록 실시한다.

2) 선발기준

가. 학교성적이 우수하며 면학자세(勉學姿勢)가 성실한 자.

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자.

4. 제출서류

- 가. 장학생 지원서 1통 (본회서식)
- 나. 총(학)장 추천서 1통
- 다. 성적증명서 1통
- 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통
- 마. 세대주 재산증명서 1통
- 바. 사진 탈모상반신 명함판 1매

5. 장학금지급

일단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대학4학년 졸업시까지 학교등록금 전액을 매학기 등록시에 지급한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가. 대학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 나. 장학금을 학업과 전연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했을 시.
- 다. 전액등록금에 대한 중복 장학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 라. 휴학, 입영 또는 기타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중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마. 기타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참고사항

장학생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간 친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강,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갖는다.